

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-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과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국민의힘 서초구 제3선거구 고광민 의원입니다.
본 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
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.
-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
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
'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' 정의를 통해 현행 추진 업무의 근거
마련 및 '공간정보협의회'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함으로써
서울시 공간정보 구축·관리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
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.
-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,
‘관리기관’의 범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수정하고,
‘서울특별시 공간정보통합체계’를 정의하여 조례 이해도를
높이고자 하였으며, ‘공간정보협의회’ 설치와 기능을 규정하여
서울시 공간정보통합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습니다.
- 또한 「국가공간정보 기본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하여

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활용하려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고,
수수료 규정을 현행화 하는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말씀드린 제안 취지를 바탕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